# 신탁부동산 공매(입찰) 공고

## 1. 공매목적부동산

물건번호	소재지	지번	종류(용도)	면적	비고(지분)
1	제주시 한림읍 금악리	6-12	토지	4,480.00 m²	4706분의 1568.67
		6-14	토지	68.00 m²	4706분의 1568.67
		6-11,6-12(2동)	건물(주택)	80.51 m²	
		6-11,6-12(8동)	건물(주택)	80.51 m²	
		6-11,6-12(9동)	건물(주택)	80.51 m²	
		6-11,6-12(17동)	건물(주택)	80.51 m²	
		6-11,6-12(18동)	건물(근린생활시설)	351.49 m²	
		6-11	토지	480.00 m²	
		6-13	토지	155.00 m²	
		6-11,6-12(1동)	건물(주택)	190.04 m²	

주 : 공매목적부동산 및 공매관련 세부내역은 등기부등본(신탁원부)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신탁 부동산 공매는 세금 체납에 따른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관련이 없습니다.)

[단위 : 원/VAT포함]

### 2. 차수별 입찰일시 및 최저입찰가격

물건번호	회차	일시	금액
	1	2019.09.24.(화) <u>(10:00)</u>	2,003,000,000
	2	2019.09.26.(목) <u>(10:00)</u>	1,803,000,000
1	3	2019.09.30.(월) <u>(10:00)</u>	1,623,000,000
	4	2019.10.02.(수) <u>(10:00)</u>	1,461,000,000
	5	2019.10.08.(화) <u>(10:00)</u>	1,315,000,000

# 3. 입찰에 관한 사항

가. 공매사항

• 공매장소 : <u>국제자산신탁(주) 부산지역본부(부산광역시 부산진</u>구 중앙대로 640, ABL부산타워 16층)

• 공매공고 : 국제자산신탁(주) 홈페이지, 한국경제신문

• 문 의 처 : 국제자산신탁(주) TEL. 051) 714-2252 / FAX. 051) 714-3005

나.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

• 입찰의 성립: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(단독입찰도 유효)하며, <mark>공매시간</mark> (입찰시간) 이후에는 공매장소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공매시간(입찰시간)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입찰의 방식 : 물건번호 전체 일괄입찰 하여야 합니다.

• 개 찰 :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

• 낙찰자 결정 :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 단,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최고 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즉석에서 재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• 수 의 계 약 : 공매가 유찰될 경우 전 차수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하여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있습니다.

• 취소 등 확인 :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 시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

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①낙찰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②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. 또한 ③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(가압류, 가처분,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)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매도자가 판단하는 경우,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. 위 ① 내지 ③에서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가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.

• 부가가치세 : 본 공매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는 포함(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함)입니다. 부가가치세 납부 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주체(당사)로부터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## 4. 입찰서류

가. 공 통 : 입찰서(당사 소정양식) 및 입찰참가자준수규칙(당사 소정양식) 각 1부.

나. 개 인 :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, 신분증(사본) 및 인감 지참.

다. 법 인 :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,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

(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) 지참.

라. 대리인 : 위임장(위임인 인감 날인) 및 대리인 신분증(사본) 지참.

#### 5. 입찰보증금

가. 입찰금액의 10% 이상 현금 또는 금융기관(우체국 포함)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제출(입찰함에 투입)하며,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합니다.

## 6.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

- 가.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(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물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)에 회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. 만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위약금 (신탁재산)으로 귀속됩니다. 이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.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의 제정·개정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반환합니다.
- 나.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,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(부가가치세 등 포함)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만일 잔금납부기일을 지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(계약금)은 당사에 위약금(신탁재산)으로 귀속됩니다.
- 다.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주체(당사)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.

구 분	금 액	납부일
계약금	매매대금의 10%	입찰보증금으로 대체
잔 금	매매대금의 90%	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
주 : 각 부가가치세 포함(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하며, 세금계산서는 발급주체로부터 교부)

# 7. 공매참가조건

- 가.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소유권이전 관련비용(이전비용 및 제세공과 금 등)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나.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까지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- 다.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,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.
- 라. 본 목적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제한물권, 소송관련사항(소유권분쟁 포함), 임차권, 유치권, 기타 이 해관계인과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.(특히, 주택임대차보호법

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요건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매각 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조사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.)

- 마. 공매목적부동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(시설물, 구조물, 기계, 장치 등 일체)과 제3자가 시설한 지 상물건 등에 대한 명도, 철거, 수거, 인도 등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바. 공매목적부동산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담금 비용 일체(연체로 포함)는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. 단, 법률에 의거 매도자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 중 환경 개선부담금, 교통유발부담금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는 <u>잔금 납부일</u>을 기준으로 이전은 매도자가, 이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.[시기를 불문하고 매도인(신탁사)은 공매목적부동산의 관리비, 수도, 가스, 전기비 등 신탁부동산을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황대로 인수하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의 매각임]
- 사.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,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, 매 도자는 낙찰자가 기 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 기 하지 못합니다.
- 아. 매수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매각 대상 물건의 매매계약허가,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,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(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)과 토지거래허가, 부동산 거래계약신고, 용도변경 등 인·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# 8. 임대차 및 인도 · 명도책임

- 가. 공매목적물에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, 실제 임대차 권리관계는 관할주민센터(세무서) 전입세대열람 (등록사항 열람) 및 탐방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수인이 직접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전 조사하여 야 합니다.
- 나. 2019.9.2. 기준 공매물건 전입세대열람 결과 공매목적부동산에 국제자산신탁(주)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(대상부동산 : 2동, 8동, 17동)가 되어있으며, 2019.9.2. 이후로 국제자산신탁(주)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본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응찰자가 공매응찰 전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(인도 및 명도) 및 비용은 응찰자 부담으로 합니다.
- 다. 공매목적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바, 응찰자는 필히 현장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치권 해결에 필요한 책임 및 비용은 낙찰자 부담으로 합니다.

#### 9. 권리제한사항의 부담

- 가. 권리제한사항 내용을 매수인은 충분히 인지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해당 제한권리 부담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매수인은 국제자산신탁(주)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.
- 나. 공매목적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기 체결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약정(구분소유 위치확인 협의서 등 용어를 불문하고 이하 같다, 관련 내용은 신탁원부 참조)이 있음을 매수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, 공매목적부동산과 관련하여 제반 문제(지료청구, 토지분할 등 일체)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고,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국제자산신탁(주)에게 민형사상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.

## 10. 유의사항

가. 입찰 당일 입찰장에는 입찰서류, 입찰보증금을 지참한 입찰 희망자만 입장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

바랍니다.

- 나. 응찰자는 공매공고, 입찰참가자 준수규칙,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,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예정자는 필히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,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.
- 라.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 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마.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- 바. 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.
- 사.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항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, 응 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,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 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.
  -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하자(등기부등본과 현황의 차이 등)
  -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
  - ③ 행정상(환지, 징발, 개발제한, 기타 모든 도시계획) 권리제한
  -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
  -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
  -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
  -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
  - ⑧ 본 사업부지 내의 유치권 및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
- 아.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, 공 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자. 공매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라도 공매물건의 원인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제한물권의 실행, 매매계약에 민법상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차. 유찰된 경우 다음 공매 개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.
- 카.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(계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)를 거쳐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여야 하며,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.

2019년 9월 9일

